
2023년 인천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안)

2023. 6.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담당관]

목 차

I. 적극행정 추진현황	3
1. 추진배경	3
2. 2022년 주요 추진성과	3
3. 반성 및 평가	10
II. '23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1
1. '23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11
2. '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11
III.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13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13
2.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20
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24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24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6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29
1. 사전컨설팅 활성화	29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30
3. 소송 등 지원	31
4.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32
VI.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33
1. 소극행정 엄정조치 및 예방	33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36
1. 소속직원의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36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37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소통 강화	38
VIII. 향후 계획	39

I

적극행정 추진현황

1

추진배경

□ 적극행정 문화 정착 필요

-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각종 정책(적극행정 면책 등)을 추진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소극적 행정 여전
-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증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직자의 자세 필요
-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2

2022년 주요 추진성과

□ 2022년 적극행정 주요 추진성과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022. 6.)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

① 생태하천 복원 주민 협업 사업

- ▶ (주요내용)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 참여 기반 마련

사 업 명		참 여 주 체	
생태 교란 유해식물 퇴치	하천 자생식물 식재	주 민	일반주민, 주민자치회, 학생
		행정기관	구, 행정복지센터
하천 생태교육· 워크숍	하천 생태 모니터링	전 문 가	하천 전문가(대학교수 등) 관련 기관(국립생물자원관 등)
		단 체	민간단체 ((사)서구 생태하천 위원회 녹색연합 등)
		기 업	1사 1하천 (관내 기업 등)

▶ (추진현황)

- '22. 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하천 생태 복원 협업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3. 협업 사업 참여 주체 결정
(주민) 검암경서, 연희, 불로대곡, 청라3 / (전문가) 국립생물자원관 / (기업) 1사 1하천 참여 기업
- '22. 4. 협업사업 추진: 하천 생태 워크숍, 자생식물 식재 사업 진행
- '22. 6. 국립생물자원관, 1사 1하천 참여 기업과 함께
 - 외래식물 제거 → 공촌천(검암경서동, 연희동), 나진포천 (불로대곡동)
 - 자생식물 식재 → 심곡천(청라3동) · 하천 생태 워크숍 → 공촌천(연희동)

▶ (추진성과)

- 주민과의 다양한 의견 소통을 통한 하천 생태 복원 사업 추진
- 지역주민, 기업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참여 및 협업

②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 (주요내용)

- 이용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또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구인·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연계,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 및 동행면접 지원
- 운영장소 : 인천 서구청 제2청사 8층(기업&일자리지원센터 내 설치)

▶ (추진현황)

- 22. 06 ~ 12. :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6회)
- 22. 12. : 취업 만족도 조사
- 23. 03 ~ 05. :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2회)

▶ **(추진성과)**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실적

(2021. 7~2023. 4월 말 기준)

구분	운영실적(합계)	상담건수			구인·구직 등록 건수			알선현황			
		소계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계	구인건수	구직건수	소계	알선건수	알선취업건수	본인취업건수
전체	9,633	6,852	6,284	568	445	12	433	2,336	1,994	145	197
2021	3,065	2,145	1,970	175	122	2	120	798	676	36	86
2022	4,852	3,485	3,213	272	229	6	223	1,138	982	80	76
2023	1,716	1,222	1,101	121	94	4	90	400	336	29	35

▶ **(기대효과)**

-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

③ 일자리 연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 추진

▶ **(주요내용)**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장애인복지일자리 10명, 자활일자리 15명
- 계도활동 : 위반차량에 사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문 부착

▶ **(추진현황)**

- 참여자 선발·지역배치('21. 12.) 및 활동시작('22. 1.)
- 권역별(지역) 조별 활동, 상시 위반지역 집중 배치 단속
- 사업추진 홍보 : 언론사 보도, 홈페이지 홍보, 이용안내문 제작 등

▶ **(추진성과)**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20명(23년 기준)
- 홍보 및 계도 활동 : 22년 1,184건 / 23년 4월말 기준 234건

▶ **(기대효과)**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의식개선 홍보 효과 극대화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감소 유도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저소득층 소득보장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총 13명 (상반기 6명, 하반기 7명)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실적가산점, 성과상여금 등급 부여, 특별휴가 2일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 속	성 명	내 용	비 고
생태하천과	강덕영	전국 최초 민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2022. 상반기 우수사례
기업지원일자리과	김재천	I-FOOD PARK 입주기업과 근로자 애로사항 적극 해결	
장애인복지과	임춘민	서로e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장애인복지과	이애선	장애인일자리 연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 추진	
장애인복지과	김남효	서구자활센터 공유용기 세척서비스 시행	
공원녹지과	이병주	노후 테니스장 전문적·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검단출장소	최연호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유치	2022. 하반기 우수사례
자원순환과	김해리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시범사업 실시	
생태하천과	서동근	사월마을 악취유발시설 개사육장 정비	
치매정신돌봄과	김보람	민·관이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치매가족의 행복한 일상회복 지원	
검단출장소	정회광	검단지역 근린공원 실태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추진	
연희동	이순화	골목형 상점가와 함께하는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결	
가정보육과	양유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 공보육 기회 확대로 저출산 문제 대응	

전국 최초 민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추진내용 :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조합)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 부서 및 조합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협업을 통해 신속한 단지계획변경 및 준공인가 처리

⇒ 주요성과 : 수도권매립지 부지는 관련법 상 민간개발(면허권) 불허 ➡ 매립면허권을 서구로 이관하여 우리 구에서 도로사업 추진(매립지 종료 문제로 환경부와 서울시 반대에도 지속적인 협의로 면허권 양수), 이후 인천시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무상양여(당초 유상양여)

I-FOOD PARK 입주기업과 근로자 애로사항 적극 해결

- ▲ 추진내용 : I-FOOD PARK(인천식품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영으로 근로자 및 구직자에게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HACCP(해썹) 품질관리자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입주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에 크게 기여
- ⇒ 주요성과 :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일자리 사업 공모 예산 112,000천원 확보, 무료 통근버스 일 307명 이용, 무료 통근버스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32명),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으로 포상금 65,000천원 확보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유치

- ▲ 추진내용 : 토지보상 및 조성비 증액에 따른 장기미집행 원신공원의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유치 추진
- ⇒ 주요성과 : · 장기미집행 원신공원 사업비(전액 국비 430백만원) 확보
·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공원 내 유치하여 생태숲 조성 등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방향의 도시공원 조성
· 적기 공원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정서적 안정의 공간 제공

청라국제도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시범사업 실시

- ▲ 추진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집을 위해 청라국제도시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운영 시범사업 실시
- ⇒ 주요성과 : 자동집하구역 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집이 의무화됨에 따라 단일관로로 설치된 청라 자동집하시설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집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를 도입

사월마을 악취유발시설 개사육장 정비

- ▲ 추진내용 : 약 30년 전부터 운영중이었던 사월마을의 악취유발 시설인 개사육장 정비
- ⇒ 주요성과 : 개사육장 5개소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진철거 유도를 통해 3개소 철거 및 2개소 철거예정
(추진 전 약 700두에서 22년 12월 기준 약 20두로 악취문제 해결)

민·관이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치매가족의 행복한 일상회복 지원

- ▲ 추진내용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치매환자 및 가족을 발굴하여 치매가족의 돌봄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치매 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치매가족 통합프로그램 운영
- ⇒ 주요성과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향상(전년대비 등록률 ▲6.8%)
치매가족 프로그램 확대 운영(전년대비 참여인원 ▲67.6%)
치매가족의 돌봄부담 평가지표 개선(우울감▼2.4, 치매이해도▲7.4)
전국 최초 힐링강연+공감토크+팝페라공연 결합한 치매가족 공감토크콘서트 개최
(치매가족 힐링과 소통 기여도(92%도움됨))
전국 최초 치매가족이 직접 만든 그림책 제작 및 전시회 운영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 2022. 2.14. : 2022년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 알림
- 2022. 3.14.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안내
- 2022. 6.29. :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협조 및 사례 안내
- 2022. 8. 5. : 2022년 적극행정지원 제도 안내
- 2022. 9.20.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홍보(카드뉴스)

□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

- 소극행정 처리 결과

(작성기준일 : 2022. 1. 1. ~ 12. 31.)

소극행정 해당여부 및 유형					기관처리 건수						
해당 (소계)	적당 편의	업무 해태	탁상 행정	기타 관중 심행정	합계 (A+B)	처리중			처리완료		
						소계 (A)	감사실	타부서	소계 (B)	감사실	타부서
0	0	0	0	0	323	0	0	0	323	19	304

□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 : 6건(2022년 회신기준)
 - 가좌여중 통학로 담장 LED경관조명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지출가능여부
 - 노외주차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의 종류 및 면적 비율
 - 공사 변경계약 체결 시 추가 계약보증금 제출 면제 여부
 -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여부
 - 공유토지에서 국가의 대표자 선임 부동산의
 - 검단신도시 C1외 2개소 연결통로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도로법 상 저촉여부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 적극적인 법제지원

- 조례·규칙안 등의 대한 입안 전 적극적인 예비 검토 지원
 - * 자치입법 현안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례·규칙안에 대한 즉각적인 자치법규 입안 예비 검토 지원

○ 법제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자치입법 실무능력 함양 지원

- 정책 집행에 필요한 법령 해설 및 법제업무 입안·운용 능력 향상
- 2022년 상·하반기 시·도 순회 법제교육 실시
(법률체계와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지원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자료 조직 내 안내
- 반복적인 유권해석 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

○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적극 지원

- 자치법규 사전심사 단계에서 법제처 입법컨설팅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법제 입안 지원
- 연초 법제처 사전입법컨설팅 수요 신청 후 상시 지원

○ 법제처 『자치법규 사전 의견제시』 제도 활용

- 자치법규 사전심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으로 유권해석 필요시 지원 절차 활용 및 법령해석사례 공유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 기관의 법령해석사례 DB 홍보 및 활용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 직무관련사건으로 공무원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
- 공무원이 당사자로 피소된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 지원

□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저조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함에 따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이해도 증진

-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을 해소,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및 적극행정 과제 추진
- 적극행정 면책,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 적극행정 사이버교육, 인사혁신처 강사풀을 활용한 대면강의 실시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이해도 제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행정안전부 및 우리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카드뉴스 제작·홍보
- 적극행정 온(ON), 자체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재하여 대민홍보 강화

II

'23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1

'23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적극행정 추진여건 분석(SWOT)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축적된 적극행정 추진 역량	경직된 공직 문화, 소극행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방안, 보호제도 확대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조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

2

'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목표

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전략	전략별 핵심과제
추진체계 확립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적극행정 법제 지원 ○ 적극행정 확산 교육 실시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으로 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소극행정 제제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극행정 예방
적극행정 주민 참여·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 적극행정 관계부서별 협조체계

소관부서	담당 업무	비고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지원 - 관계부서 협조체계 구축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장교육과 사이버교육 강화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운영(23. 지침 개정내용) 	적극행정 전담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법제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기획예산담당관 (전략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지원부서
총무과 (인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교육훈련 지원 및 상시학습 이수 시간 부여 	
전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시책 발굴 및 추진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전담부서) 기획예산담당관
-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예산담당관

1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점 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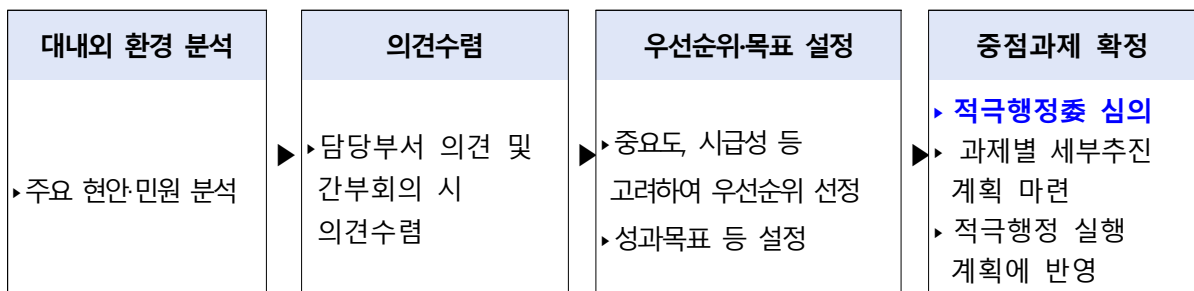
□ 선정기준

- 주민편의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 체감형 중점과제 선정
 - 기존 업무 추진성과가 미흡했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 미해결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선정절차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

< 중점과제 선정 프로세스 >



□ 추진방식

-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추진 지원

□ 중점과제

① 무연고수급자 사망 후 유류품 정리 지원

○ (선정사유)

- 1인 독거세대로 거주하던 수급자 사망 후 유류품 정리에 대한 매뉴얼 부재
- 신속히 유류품 정리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및 임대인의 독거세대 임차 기피 현상을 완화코자 함

○ (주요내용)

- 1인 수급가구는 10,701가구로 전체수급자(16,442가구)의 65%임
 - * 수급자가구 : 중복자격 및 시설수급자 제외 / '23. 4월 기준
-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사망 등의 처리)에 따라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할 시 공영장례를 치루며 가족관계 단절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유류품 처리는 민법의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임대인 임의 처리가 불가함. 임대인은 사망자의 연고자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를 알 수 없으며 가족관계 단절의 경우 유류품 정리를 민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임대인의 요청이 있을 시 구청에서 연고자에게 유류품 정리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기한 경과 시 사망자의 유류금 또는 구비로 유류품 정리 지원

* 공영장례 처리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처리건(명)	36(100%)	27(100%)	46(100%)
수급자(명)	27(75%)	23(85%)	40(87%)

○ (현재 추진현황)

- 민법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금 정리 : 3건

○ (기대효과)

-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 및 독거세대 임차 기피 현상 완화

②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인천 최초, 인천 유일)

○ (선정사유)

- 장애인일자리 전담 상담 창구 설치·운영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생산적 복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

○ (주요내용)

- 이용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또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
- 지원내용 : 구인·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연계,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 및 동행면접 지원
- 운영장소 : 인천 서구청 제2청사 8층(기업&일자리지원센터 내 설치)

○ (추진현황)

- 21. 12. : 취업 만족도 조사
- 22. 06 ~ 12. :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6회)
- 22. 12. : 취업 만족도 조사
- 23. 03 ~ 05. :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2회)

○ (기대효과)

-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
-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

○ (추진성과)

-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실적

(2021. 7~2023. 4월 말 기준)

구분	운영 실적 (합계)	상담건수			구인·구직 등록 건수			알선현황			
		소계	전화 상담	방문 상담	소계	구인 건수	구직 건수	소계	알선 건수	알선 취업 건수	본인 취업 건수
전체	9,633	6,852	6,284	568	445	12	433	2,336	1,994	145	197
2021	3,065	2,145	1,970	175	122	2	120	798	676	36	86
2022	4,852	3,485	3,213	272	229	6	223	1,138	982	80	76
2023	1,716	1,222	1,101	121	94	4	90	400	336	29	35

-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 : 6회(22. 6. ~ 23. 5.)

③ **민관협력을 통한 친환경 카페 개소로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 (선정사유)

- 스타벅스, 한국환경공단 및 서구지역자활센터 3자 협약을 통한 환경공단 내 친환경 카페를 운영하여 커피박 재자원화 촉진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근로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민관 MOU체결을 통한 카페(카페 지구별) 신규 개소로 양질의 자활일자리 창출

MOU체결 기관별 협약사항

- 서구지역자활센터 : 카페운영(청년자립도전 자활근로자 배치), 다회용기 운반·세척
- 환경공단 : 카페 장소 및 운영 지원
- 스타벅스 : 카페 인테리어비용 지원 및 바리스타 교육, 운영 노하우 전수

- 다회용기 사용 및 커피박 재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카페 운영

○ (현재 추진현황)

- 2023. 2. 카페 인테리어비용 후원 및 인테리어 추진
- 2023. 3. MOU체결 및 카페 개소식
- 서구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자활근로자 배치 : 4명
- 서구지역자활센터 자원순환 사업단 카페 내 커피박 및 다회용기 수거·세척

○ (기대효과)

- 민관협력(스타벅스, 환경공단, 서구지역자활센터)으로 안정적인 자활 일자리 창출
- 바리스타 교육 및 운영 노하우 전수로 직업능력 향상 및 수익 창출
- 커피박 재자원화 및 카페 내 다회용기를 사용으로 1회용품 사용 감축

○ (추진성과)

-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자활근로자 4명 배치 및 수익 창출(일매출 60만원)

④ 서구형 골목형상점가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 (선정사유)

- 골목형상점가 성장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상인역량 강화
- 골목형상점가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서구형 핀셋 지원
- 골목형상점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국·시비 공모사업 지원

○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 현장매니저를 운영하여 원스톱 밀착지원 추진
-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 특색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상권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권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협업사업 추진
- 상인조직 활성화를 위한 상인 역량 강화 지원

○ (현재 추진현황)

- ~ '22. : 골목형상점가 17개소 지정 및 운영
- '23. 1분기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골목형상점가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 '23. 2분기 :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공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국·시비 공모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회복

⑤ 전국 자치구 최초 「말라리아 퇴치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선정사유)

- 우리나라는 2027년부터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제로(無)를 달성해야 함
- 서구는 말라리아 국내 4번째 다발생 지역임과 동시에 담당인력과 체계 부족
- 따라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말라리아 전담반」을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장기적으로 연속성 있게 시행함으로써 서구 말라리아 박멸 달성

○ (추진현황)

- 22.01. ~ 02. :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모기 서식지등) 조사
- 기간별 주요 방역활동

1월~3월	4월~5월	6월~10월	11월~12월
-월동모기(유충)방제 -기초자료 구축	-봄철 유충방제 등 성충 발생 예방	-하절기(모기활동시기) 성충,유충방제	-겨울철 유충방제

- 말라리아 확진자 발생지역 집중방역(주2회 3주간 실시)
- (연중) 취약계층 방문방역사업
- 22.10. : 황화산 들판 축제 홍보부스 운영
- 22.10. : 정서진 아라뱃길 카약축제 홍보부스 운영
- 22.04. : 관내 의료기관 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배부 및 교육(43회)
- 친환경적 물리적 방제기기(해충유인퇴치기) 설치·운영 : 124대
-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운영 : 26개소
- 가축 농가 유문등(포집기) 설치 및 관리 : 70대
- 모기발생정보시스템(DMS) 설치·운영 : 설치대수 14곳

○ (주요내용)

- ① 홍보·교육, 매개체관리, 환자관리 총 3개 분장으로 개별 사업 실시하여 업무의 체계화 및 질 향상

<p>■ 말라리아 질병인지도 향상 홍보·교육 → 조기진단을 통해 전파 사전 차단</p> <p>○ (강화된점) 찾아가는 홍보·교육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 실시- 발생지역 주변 학교 학생 대상 보건교육 실시- 관내 약 150개 의료기관 대상 말라리아 진단키트 직접 배부 및 교육 실시 <p>■ 철저한 말라리아 매개 모기 방제 → 매개체 차단</p> <p>○ (강화된점) 권역별 하절기 방역 차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에 맞는 맞춤형 방역 실시 (단순 연무,연막 방역에서 탈피하여 모기 발생지, 서식지 등을 정밀조사하여 타겟방역 실시)○ 방역지리정보시스템(GIS) 적극 활용, 방역데이터 아카이빙을 통해 과학적 방역 점진적 강화 <p>■ 빈틈없는 말라리아 환자 관리 → 재발방지 및 전파 차단</p> <p>○ (강화된점) 환자 1:1 복약관리, 거주지 방문 환경관리 및 심층조사, 주변 모기 조사 후 합동방역 실시, 완치조사 협조 유도(선물 증정)</p> <p>○ 노출자 관리 : 동거인 및 지역주민 대상 조기진단 및 예방약 복용 권고</p>

- ② 전담반 인력의 전문화 : 전문직위 지정을 통해 장기근무 가능하게 하여 연속성 있는 말라리아 퇴치 사업 진행

○ (기대효과)

- 조기진단, 모기방제, 환자관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하여 말라리아 환자 수 감소

○ (향후계획)

- 말라리아 환자 감소를 위한 업무별 세부계획 수립
- ‘기초자치구 최초 말라리아 퇴치 전담반 구성’ 보도자료 배포

□ 기본방향

- 적극행정위원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적극행정’의 뒷받침 역할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주민·기업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제시

□ 구성 및 운영

- (구 성)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9명
 - (당 연 직) 4명 (부구청장, 미래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감사담당관)
 - (위 축 직) 5명
 - * 간 사(적극행정 책임관) : 기획예산담당관
- (운 영) 분기별 개최 원칙 *단,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운영방식)
 -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준수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6조
 -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 (회의방식) 대면회의 원칙 (서면회의, 온라인 영상회의 가능)

□ 심의안건

< 주요 심의의결 사항 >

-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7) 적극행정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이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 추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3159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추진방향) 공무원이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처리방향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 운영 프로세스



1단계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중요 결정사항 심의요청

-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공문 신청
- 단, **사전에 법률검토 후 신청** (심의 안건 제출 시 검토내용 기재)
→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

2.3단계 안건검토 및 사전심의

- 안건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안건 제한 사유 >

- ▶ 담당자와 대상 업무(사례)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 ▶ 관계 법령이 명확한 경우 등 신청자의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인가·허가 등의 거부처분
- ▶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이미 내려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
- ▶ 부서 간 업무조정 또는 단속 강도의 조율 등 적극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
- ▶ 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

- 필요시 심의 내용 사전검토 및 처리방향(안) 마련 →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

4단계 적극행정 업무의 처리방향 최종 제시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처리기한) 안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하에 기한 연장 가능

- (운영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가능
-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활용
-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해관계자(주민 등) 의견 청취*

- * 회의 참석 또는 의견 제출

- (현안심의 강화)

- 주민안전, 장기 미해결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항은 적극적 심의를 통해 적시 대응

- (의견제시 반영여부 회신)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공문으로 제출

*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반영한 경우 미반영 사유 등 기재

- (의견제시 효과)

- (징계 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 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 면책대상 제외: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 자체감사기구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간 신청 안전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개 요

- (근거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선발대상)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우수사례)
- (선발시기)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 (선발규모) 반기별 5명 내외(연간 총 10명)

< 2023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10명	5명	5명

□ 심사기준 및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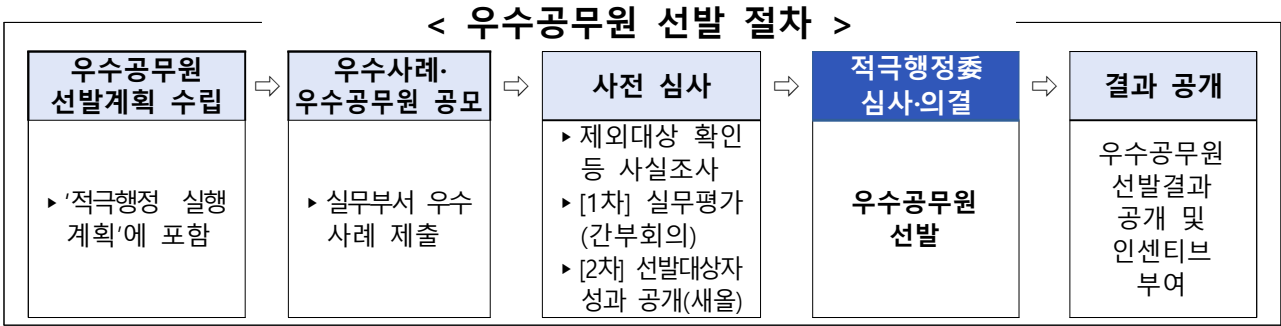
- (심사기준) ① 주민체감도(40%), ②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③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④ 확산가능성(10%)
- (분 야) 규제혁신, 민원·갈등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협업, 행정효율 향상 등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 중심으로 선발

○ (제외대상)

- ▶ 기 수상사례 및 기존 유사사례의 일부 내용을 단순 수정·변경한 경우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명확하게 제시
- ▶ 기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례
-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 다만, 징계 등이 사면되었거나 주요비위(금품·행음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이 말소된 경우 선발 가능
- ▶ 추천일 현재 1년 이내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
-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2년 이내 같은 훈격(구청장) 포상 대상 제한

□ 선발절차



①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제출

- 부서장이 공적 확인하여 각 실·국장, 보건소장이 추천
- * 동 행정복지센터 ⇨ 자치행정국장 추천

② 사실조사를 통한 제외대상 조사

- 우수공무원 대상자에 대한 포상·징계여부 확인(감사담당관, 총무과)
- 선정대상자 및 우수사례 게시(새울 시스템) 및 이의신청 접수

③ 간부회의 사전 심사

- 부구청장 간부회의 시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차 심사

④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발

- 심사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또는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발,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 (대 상) 우리 구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건 및 신규사례
- (선정기준) 창의성, 전문성, 주민체감도,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사례 선정
- (인센티브)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선정된 사례의 공적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와 연계 진행

□ 개 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 (기본원칙)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 1종 부여
 - * 개인 희망 반영
- (부여시기)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계 진행
- (대 상)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
- (규 모)

< 2023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10명	5명(50%)

□ 인사상 인센티브 유형

파격적 인센티브	특별승진	5급 이하 공무원을 1계급 승진 임용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을 1단계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근평가점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1.5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
인사상 인센티브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포상휴가 부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희망부서 전보	필수보직기간 경과 전이라도 희망부서로 전보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기준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선정 * 인센티브와 함께 기관장 표창 수여

구 분	인센티브 유형		비고
최우수 (90점 이상)	파격적 인센티브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 실적가산점 1.5점 · 교육훈련 우선 선발 (장기·단기)	택1
	인사상 인센티브	· 특별휴가 3일 · 희망부서로의 전보	
우 수 (80점 이상)	파격적 인센티브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A등급 이상 · 실적가산점 1.0점 · 교육훈련 우선 선발 (장기·단기)	택1
	인사상 인센티브	· 특별휴가 2일 · 희망부서로의 전보	
장 려 (70점 이상)	파격적 인센티브	· 실적가산점 0.5점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단기)	택1
	인사상 인센티브	· 특별휴가 1일 · 희망부서로의 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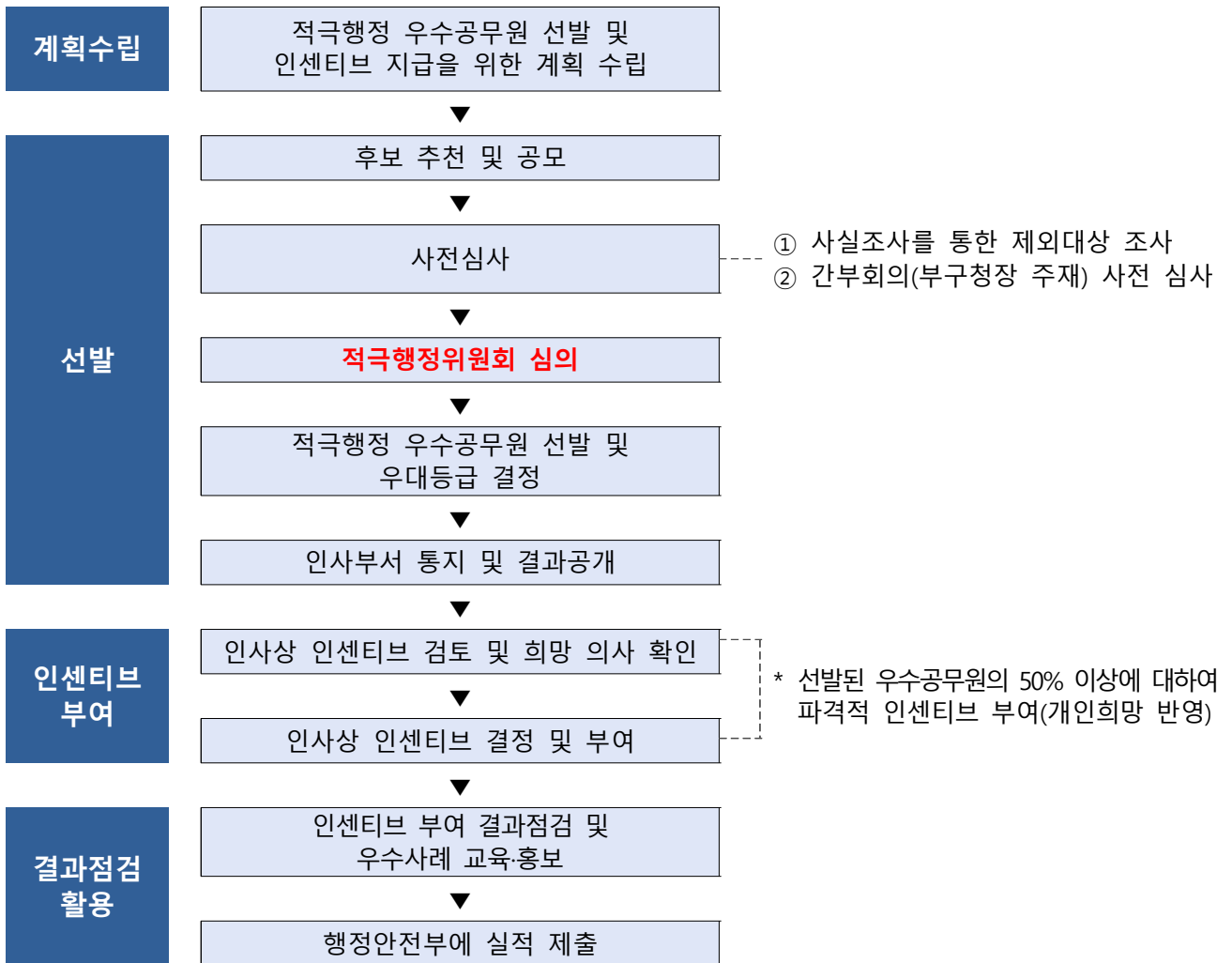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 *인센티브 유형 확대 적용

인센티브 유형		비고
파격적 인센티브	· 특별승진 · 특별승급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 실적가산점 1.5점 · 교육훈련 우선 선발 (장기·단기)	택1
인사상 인센티브	· 근속승진기간 단축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특별휴가 3일 · 희망부서로의 전보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계 진행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최우수 등급과 동일하게 간주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 기획예산담당관)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우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인센티브 결정 / 기획예산담당관) 우대등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 유형을 우수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센티브 확정·통보
- (인센티브 부여 / 총무과) 인사일정에 맞춰 인센티브 유형별 부여시기 도래 시 즉시 부여하고,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
- (결과점검 / 기획예산담당관)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결과 확인·점검

□ 사전컨설팅감사 운영

- (관련규정)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신청주체) 구청장(구 감사대상부서는 자체 감사부서를 거쳐 신청)
- (대상업무) 적극행정 지원 사무, 법령 등 해석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신청절차)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
 -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전, 서구청 감사부서의 장의 검토 실시
- (처리절차)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인천광역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효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면제
- (활성화 계획)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적극 홍보

□ 면책심사 상담창구 운영: 감사기간 중

- (개 요)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으로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 (근 거)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요 건)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제외대상)
 - 금품수수의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반 영)
 - 감사보고서 작성 시 적극행정 면책 사례 있는 경우 포함 작성

□ 징계 등 면제

-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감사원·정부(행안부)·시도 및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제외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2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의2제3항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
 -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

- *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제외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2조, 제16조제3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의2제4항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기획예산담당관
- (면책보호관 지원대상)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
 - *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면책보호관 역할)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로 인정된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리 보호
 - * 세부계획수립 추진 예정 ('23. 7월)

3 소송 등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적극행정의 결과로 공무원(퇴직공무원 등 포함)이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지원
 -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제2항 및 제3항
 - *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참고) 규칙안」('23. 1월, 행안부 공문시행)을 바탕으로 자체 규칙 제정 예정('23. 9.)
-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
 - 직무 관련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 등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6조(수행절차)

- 공무원등이라 함은 전출 및 퇴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현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조제5호(정의)

-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소송대리인·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형사사건	400만원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에 따라 지급
민사소송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름 (서구 법률 및 소송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7조(수임료)

4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

□ 주요내용

- (공제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종합배상공제’

* 2022년 행정종합배상공제 정기등록[총무과-44270(2022.12.29.)]

- (가입기간) 2023. 1. 1. ~ 12. 31.(1년)

- (적용대상) 서구 소속 직원(공무원, 공무직, 임기제, 청원경찰 포함)

구분	가입인원	공무원	임기제	비고
인원수	1,520명	1,432명	88명	정원의 20% 이내 추가 보장 (공무직 등 : 211명)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수로 일괄 가입하되, 계약직 공무원도 보장
- 구의원, 기간제근로자는 미포함

- (보상범위)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비용 등을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영조물로 인한 손해, 국가배상 등

- (보상한도) 1청구당 보상한도(3천만원) / 연간 총 보상 한도(5억원)

1 소극행정 엄정조치 및 예방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분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p>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
업무 해태	<p>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낙장 대응 등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
탁상 행정	<p>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 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 ·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 ·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p>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 ·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 ·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월 가산
 - *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인사상 불이익 부여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마. 부작위·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바.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 자체 점검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
 - 매년 분기별로 민원처리 확인·점검 후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사항(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의거 조치

〈조치기준〉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 지적사항 항목별 3회 이상 반복 지적시 - 민원사무 처리기간 3일 이상 지연시	주 의	● 1년간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조치 ●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경위, 업무 태도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은 가감할 수 있음.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주의' 3회 이상 조치시 - 민원사무 처리기간 5일 이상 지연시	훈 계	
-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 따른 '훈계' 3회 이상 조치시	경징계	

□ 소극행정 예방

○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
- 감사부서에서 조사·처리하고, 결과통보

○ 소극행정 민원 접수·처리 세부절차

- 소극행정 민원신청(민원인) → 소극행정 접수(감사부서) → 소극행정 여부 판단(감사부서) → 소극행정 조사·처리(감사부서)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 처리부서 재지정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고

□ 적극행정 확산 교육

○ 적극행정 활성화 직장교육(집합교육)

- (목 적) 적극행정과 지원제도·사례에 대한 전과교육을 통해 공무원 인식 전환 및 공직사회 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 (일 정) 2023년 10월 *예정
- (대상/시간) 전 직원 / 연 1회 *(부)단체장 직접 참여 / 서구시설관리공단 포함
- (교육방법) 인사혁신처 강사풀을 활용한 대면 강의
- (교육내용)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등

○ 이러닝 교육

- (일 정) 2023년 2월 ~ 11월
- (대 상) 전 직원
- (교육방법)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내 강의수강
* 5개 과정 중 1개 과정 이상 이수
- (교육과정)

학습사이트	과정명	상시학습 인정시간	신청기간
행정안정부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1시간	2022. 2. 1. ~ 11. 25.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지방자치단체)	1시간	2022. 2. 1. ~ 11. 25.
	적극행정 추진방안	30분	2022. 2. 1. ~ 11. 25.
	적극행정의 이해	1시간 40분	2022. 2. 1. ~ 11. 25.
	다함께 적극행정	50분	2022. 2. 1. ~ 11. 25.

□ 적극행정 법제역량 강화 교육

- (시기) 2023. 6 ~ 7월
- (대상) 전직원
- (강사) 황성연 변호사(現 법무통계팀장)
- (방식) 대면 강의
- (내용)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및 소송실무 교육

주요 개념 및 소송사건 사례 분석을 통한 적극행정 법제역량 강화

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확산

□ 적극행정 홍보 강화

- 대민홍보
 - (제 작)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흥미도와 전달력이 높은 홍보 콘텐츠 제작
 -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공무원) 선발 사례 및 우수사례 발굴
 - (확 산) 적극행정 온(ON), 자체 SNS(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재, 적극행정 보도자료 배포 등
- 내부홍보
 -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 우수사례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 (도입목적)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신청요건) 신청대상에 해당하면서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

신청 대상	예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타 민원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국가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 (처리절차)



- (적극행정 실무TF) 각하 여부를 1차 판단, 각하되지 않은 안건은 담당 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전달
- (적극행정 전담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각하 여부 2차 판단, 처리부서 지정 또는 이송 신청
- (처리부서 역할) 국민신청 내용을 지정받은 처리부서는 신속하게 내용을 검토하고 법령·규정에 대한 유연한 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 적극행정 추진일정

주요 내용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6.30.	
○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의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처리방향 의견제시 등	연중	
○ 적극행정 교육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적극행정 이러닝 수강 독려	연중	
○ 적극행정 국민참여·소통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작·전파, 홈페이지 및 '적극행정 온(ON)' 게재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및 처리	연중	
○ 적극행정 종합평가 실적 제출	12월	
2.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상·하반기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상·하반기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연중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7월~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및 퇴직공무원까지 지원대상 확대 - 관련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	8월~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엄정조치	연중	
○ 소극행정 신고 및 재신고 처리·이행 상황 관리	연중	

□ 협조사항

○ (전부서)

- 적극행정 집합·이러닝 교육 이수
- 적극행정을 통하여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추진과제 발굴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추진

○ (감사담당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등 소극행정적 예방 및 혁파 철저

○ (총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